

## 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

### 〈유형2 중·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 지원 공모〉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·대형 우수 전시콘텐츠의 유통 확산 및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<중·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할 전시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## I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6 지역전시 활성화 <유형2. 중·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>
- (모집기간) 공고일로부터 ~ 2025년 12월 26일(금) 17:00까지
- (지원대상)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전시단체 및 전시기획사
- (지원내용) 전시 기획·설치·운영 등 직접경비 지원
- (지원규모) 건당 3억원~5억원 / 총 10억원 내외, 3건 내외 선정
- (지원조건)

#### 주요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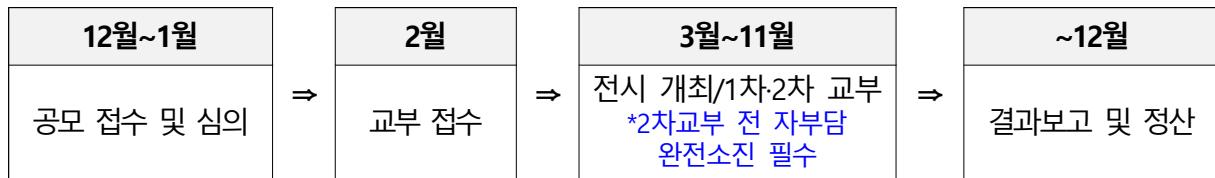
※ 모든 지원조건 및 증빙 불충족시 심의대상에 제외될 수 있음
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e나라도움 운용이 가능한 사업자(예치형 사업 운영)</li><li>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시단체 및 전시기획사</li></ul>
지원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청주체가 최근 3년(23년 1월~25년 11월)내 주최·주관·기획한 전시만 지원 가능</li><li>- 최근 3년(23년 1월~25년 11월)내 유료로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만 지원 가능</li><li>- 유료관람객수 5,000명 이상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전시만 지원 가능</li></ul>
전시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실내 전시전용면적 250평(약 826.44m<sup>2</sup>) 이상 필수(야외 미포함)</li><li>-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전시공간만 가능</li><li>- 기개최했던 전시공간에서 재개최 불가</li><li>- 전시전용공간, 복합문화공간 등 지원 가능(카페 등 상업시설은 지원 불가)</li></ul>
예산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국고보조금은 3억 원 ~ 5억 원 내에서 자유 선택</li><li>- 총 국고보조금의 10%를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 필수</li></ul>
전시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유료 전시로만 개최 필수</li><li>- 전시기간은 2026년 3월 3주 ~ 11월 4주 내에 설정 가능</li><li>- 설치·철수·휴관일을 제외하고, 연속 50일 이상 전시 개최 필수</li><li>- 전시해설프로그램(도슨트) 오프라인 기준 20회 이상 운영 필수</li><li>- 관람객만족도조사 300부이상 제출 필수</li></ul>

- (우대사항)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우대

## 공모 세부내용

- (보조사업 기간) 2026년 3월 ~ 2026년 11월 (9개월)
- (지원방법) 전시단체·기획사는 직접 개최한 전시 중 지원조건에 맞는 전시를 선택한 후, 사업기간 중 개최 가능한 지역의 전시공간을 리서치하여 공모 지원 (※세부 지원조건은 2~4p 참조)
- (추진일정) \* 추진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

- (지원대상)

### 지원대상 필수조건

-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전시단체 및 전시기획사
- e나라도움 운용이 가능한 단체(예치형으로 사업비 운영/정산/검증 필수)

### 지원불가 대상

- 지역전시활성화사업 내 타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
-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/박물관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
-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
-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
-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
-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화예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-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
-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
- 「예술인관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
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
-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
-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인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
○ (지원전시)

<b>※지원전시는 아래 모든항목을 충족하여야이며, 증빙서류 미제출시 조건 불충족으로 간주</b>		
<b>지원전시 필수조건</b>	<b>지원조건</b>	<b>증빙서류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3년(23년 1월~25년 11월)내 유료로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원하려는 전시의 유료티켓가격과 전시기간이 명시된 홍보물 제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주체(단체)가 최근 3년(23년 1월~25년 11월)내 주최·주관·기획한 이력이 있는 전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청주체명이 주최·주관·기획으로 명시된 홍보물(포스터, 리플렛, 링크 등) 제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주체(단체)가 최근 3년(23년 1월~25년 11월)내 유료관객수 5,000명 이상 실적 증빙이 가능한 전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티켓 정산서 등 객관적 판매내역 제출 *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필수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각예술(미술)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가/작품 제한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료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액제한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기간 26년 3월~11월 내 설정</li> <li>전시일수 연속 50일 이상 유지(설치, 철수, 휴관일 제외)</li> <li>전시해설프로그램(도슨트) 오프라인 기준 20회 이상 운영</li> <li>관람객만족도조사 300부이상 제출</li> <li>총괄기획자 선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증빙 불필요 (공모지원신청서 내 해당조건을 충족하여 작성 후 제출)</li> </ul>

<b>지원 불가 전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</li> <li>복제(레플리카) 전시, 아트페어/장터형 전시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	---

○ (전시공간)

<b>전시공간 필수조건</b>	<b>※전시공간 조건은 아래 모든항목을 충족하여야 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내 전시전용면적 250평(약 826.44m<sup>2</sup>) 이상의 전시공간(야외 미포함)</li> <li>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전시전용공간</li> </ul> <p>※ 공모 지원시 전시공간과 실제 전시공간이 상이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</p>
<b>우대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우대</li> </ul>

<b>지원 불가 전시공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소지가 서울인 전시공간(서울에서 전시 개최 불가)</li> <li>지원하려는 전시의 과거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공간</li> <li>식음료시설, 로비, 복도 등 상업시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경우</li> <li>1개의 공간에 타 용도와 혼용되는 경우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○ (사업비 지원내용) \*사업비=국고보조금+자부담

- 국고보조금 : 3억 원 ~ 5억 원 내 자유 선택

- 자부담 : 총 국고보조금의 10%를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/지출 필수

※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(국고보조금, 자부담)으로 편성/지출 불가하며 순수자부담(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제외)으로 지출하여야 함 (단 면세,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지원 가능)

※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일 경우 심의시 축소 조정될 수 있음

※ 사업비 지원가능 항목의 유의사항 위반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			
목	세목	지원항목(국고보조금/자부담금)	유의사항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• 참여작가 사례비(Artist's fee)	- 지원단체 소속인력(대표자포함) 책정 불가
		• 총괄기획자 사례비	- 외부인력에 한해 책정 가능(내부 총괄기획자는 사례비 책정 불가)
		• 외부 전문가 사례비 - 도슨트, 학술행사, 통번역	- 국고보조금의 2.0% 초과 책정 불가
		• 재료비 - 부대행사 재료구입 등	- 총괄기획자 외 큐레이터 등 책정 불가
	공공요금 및 제세(02)	• 보험료 - 전시공간, 작품	- 지원단체 소속인력(대표자포함) 책정 불가
		• 임차료 - 전시공간, 전시장비	-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자부담으로 지출 필수
	일반용역비 (14)	• 공간연출(설치/철수) 대행용역비	- 1개 대행업체와 다수 계약 불가
		• 작품운송 대행용역비	- 1개 대행업체와 공급가 기준 2천만원 초과 계약 불가
		• 전시장지킴이 인력대행 용역비	- 인적용역 계약 불가
		• 전시 홍보/광고 대행용역비 - 홍보물 디자인, 인쇄, SNS광고 등	- 계약체결,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
		•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※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시 지출 가능	-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자부담으로 지출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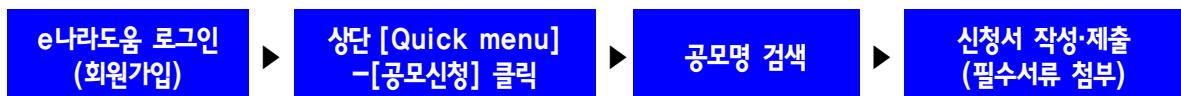
사업비 지원 불가항목	
선정단체/기업 경상비	•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, 온라인 시스템 운영비(소프트웨어 구입비 포함) 등
자본적 경비	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및 제작 등
업무추진비	• 간담회, 업무회의 등을 위한 식음료비, 업추비 등
여비	• 전시를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
전시 준비비	• 전시 준비를 위한 장소답사, 자문, 회의비 등
기타	•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
## 수익금 활용

- 입장료 등 수익 발생에 대한 수익금 통장개설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 필수(공모 선정 후 제출)
- 비영리단체일 경우 입장료 수입이 자부담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 필수

### III 공모 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~ 2025년 12월 26일(금) 17:00까지  
\* 해당기간 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을 통해 신청



- (필수 제출서류)

- \* 필수 제출서류는 제출형식에 맞게 제출하며, 양식 변경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\* 아래 필수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\*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제출서류의 반환·수정 불가

연번	제출여부	제출서류	제출형식
1	필수	•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·제출
2	필수	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	PDF
3	필수	• <b>서식1</b> 공모지원신청서	HWP
4	필수	• <b>서식2</b> 신청사업 기개최 증빙서	PDF
5	필수	• <b>서식3</b> 신청사업 참여작품 리스트	PDF
6	필수	• <b>서식4</b>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PDF
7	필수	• <b>서식5</b>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PDF
8	필수	• <b>서식6</b>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PDF
9	필수	• <b>서식7</b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
10	필수	• <b>서식8</b>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PDF
11	선택	• 공간협약서(제출시 전시공간 날인 필수)	PDF
12	선택	• 후원/협력 증빙서(제출시 후원/협력기관 날인 필수)	PDF
(참고) 별도제출		• 면접심의 발표자료 ※ 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안내 예정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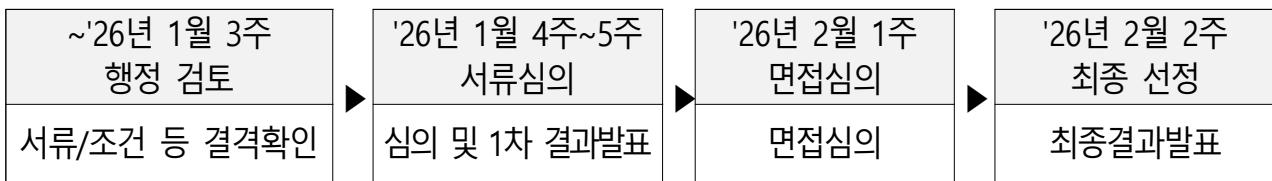
## ○ (유의사항)

- 공모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기개최 전시내용과 공모신청서의 사업내용(코어콘텐츠, 작가/작품 등)은 80%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하며, 20% 내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함. 변경내용이 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자부담은 1차 지급분 중간정산 시 자부담 전액 소진 및 회계검증 완료를 원칙으로 함
-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사업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.
- 제출서류는 반환·수정 불가능, 서류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
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료 및 서약서 제출
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일체에 후원 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전시기간 중 사업 모니터링시 협조(티켓 등)
- 시각예술시장조사(\*)(구)미술시장실태조사 설문 응답 필수
-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변경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총사업비는 반드시 회계법인(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)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보고서 수령 필수
- 제출서류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취소 및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사용 가능,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해지를 금지함
- 사업비 통장은 타 사업 및 개인 지출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하며, 기간 내 휴·폐업 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사업 운영은 보조금법,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-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'예술인복지법'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'예술인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, '예술인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## IV

## 공모 심의

- (심의일정) 2026년 1월 1주 ~ 2월 2주



※일정 및 심의방식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 결과발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예정

- (심의방법)

- 1차 서류심의
- 2차 면접심의 : 공모신청서 상의 총괄기획자 1인의 PT/인터뷰

※총괄기획자 변경 불가, 총괄기획자 외 배석/참관 불가

- (심의지표)

심의지표	비중	착안사항
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 전시 기개최 실적의 신빙성</li> <li>- 사업내용의 구체성</li> <li>-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</li> <li>- 전시지역 분석 및 이해도</li> </ul>
관객 확보의 구체성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공간의 접근성 및 환경</li> <li>-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</li> <li>- 안전사고 예방, 사회적약자 등을 위한 관리 계획이 수립된 공간 선정</li> </ul>
신청주체 역량 및 실적	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기획자 및 신청주체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</li> <li>- 지원 신청 사업(전시)의 실적 및 현장 기여도</li> </ul>
목표 달성 및 기대효과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 전시의 성과 목표 실현가능성 및 기대도</li> <li>- 신청 전시의 지역 향유 및 미술현장 파급효과</li> </ul>

## V

## 문의처

- 관리사무국 : 02-6009-2750
  - \* 문의 가능시간 : 평일(월~금) 10시~17시 \*점심시간(12시 30분~1시 30분) 제외
- e나라도움 이용문의 : 1670-9595